

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

□ 개정이유

- 지방세법의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주차장용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감면 규정을 폐지하고,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며,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조례의 일부 내용을 보완·정비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범위를 종전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직계존·비속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직계존·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·자매의 명의로 등록하는 것으로 확대함.(안 제2조 및 제4조)
-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범위를 종전 재산세·종합토지세·도시계획세 세율의 50%을 경감하던 것을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확대함.(안 제10조)
-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종전 5세대 이상에서 2세대 이상 임대로 범위를 확대함(안 제12조)

-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· 종합토지세 · 도시계획세 · 사업소세를 주차장 설치일 이후 5년간 면제하던 조항을 삭제하고 주차전용 토지에 대하여도 종합토지세 · 도시계획세를 주차장 설치일 이후 5년간 면제하던 조항을 삭제함.

□ 검토의견

가. 법령적합성

- 시세 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임.

지방세법

제9조 (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)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·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. [개정 78 · 12 · 6, 98 · 12 · 31]

- 이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승인을 한 사항으로 동 개정 조례안의 법령적합성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됨.

나. 내용타당성

- 동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①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범위 확대, ②지정문화재에 대한 기존의 감면범위를 확대, ③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5세대에서 2세대로 확대, ④주차전용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감면 조항을 삭제하는 것임.

○ 개정내용중 대부분은 일반서민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을 위한 것으로 내용상 타당하다고 생각됨. 주차전용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감면조항 삭제는

- 1) 주차장 시설의 신설이 오히려 도심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실정이고 주차장 시설에 대한 감면이 시세 감면의 원래 목적인 공공성에도 위배되고
- 2) 부칙조항에 경과조치를 두고 있으므로 내용상 동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생각됨.

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부칙

③ 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